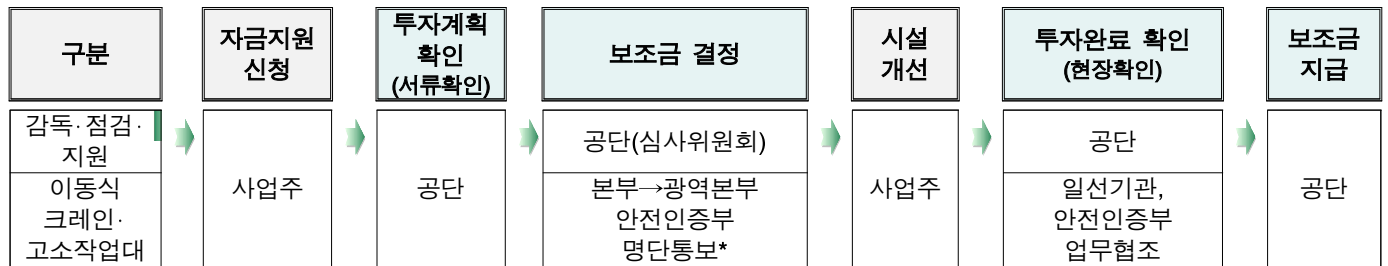


'21년도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

가. 목 적

-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
나. 추진절차



다. 추진내용

□ 지원대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,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
※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하고 지급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

□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

- 지원금액 : 사업장 당 3,000만원 까지

※ 자금결정일 기준 연 2회 이내

- 보조비율 :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

□ 지원설비

- 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*

* (화재·폭발 예방설비) 환기팬 및 덕트,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(등), 용접작업 불연포, 이동식 포소화설비, 가스검지 및 경보기, 복합가스농도측정기,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, (기타 설비) 건축물 내화 공사, 방폭형 전기·기계기구장비 등 본부에서 정하는 품목

□ 절차별 추진내용

① 보조지원 신청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하되, 온라인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(우편 포함) 신청 가능

- 제출서류

-
-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
 -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-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 - ④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
 -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사업주 자필서명)
 - ⑥ 상품설명서(카달로그 등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자료 등
 - ⑦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 - ⑧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(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)
 -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 - 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(산재보험료 체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여부 확인 가능시 제외)
 - ⑪ 지원품목 설치 대상 설비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(현장 사진, 공단 기술보고서 등)
-

※ ②,③,⑤,⑦의 동의서는 전산 동의 시스템 구축시 제출 생략(본부 별도 시달)

※ ⑧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징구

※ ⑨의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는 건설기계 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한하여 제출 생략

② 투자계획 확인

○ 확인시기 :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후

○ 확인방법 : 사업장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로 투자계획 확인

※ 단, 지원품목의 타당성 등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 투자계획 확인 가능

③ 「보조지원 결정」

○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수행기준(운영규정, 처리규칙, 업무수행지침, 사업계획 등) 준용

※ 보조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시 [붙임2]의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결정

④ 「시설개선」

○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수행기준(운영규정, 처리규칙, 업무수행지침, 사업계획 등) 준용

○ 부식 또는 파손 등의 중대결함이 있는 불량 부품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

○ 지원설비가 “보조지원사업 지원설비 안전조치기준” 적용대상인 경우 관련 기준 적용

⑤ 「투자완료확인 및 보조금 지급」

○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수행기준(운영규정, 처리규칙, 업무수행지침, 사업계획 등) 준용